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정상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자: 정 상 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CONTENTS

Issue Paper

I. 입법평가 개요 04

- 1. 입법평가의 배경 04
- 2. 입법평가의 대상 05
- 3. 입법평가의 범위 06
- 4. 평가항목의 제시 06
- 5. 평가방법론 07

II. 입법평가 08

- 1. 규범 체계의 분석 08
- 2. 규범의 효과성 분석 14
- 3. 규범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17

III. 입법대안 검토 24

- 1. 입법대안 제시 24
- 2. 입법대안 심사 26
- 3. 입법대안의 수정 및 평가결과 28

IV. 요약 및 권고 29

- 1. 입법대안의 선택 29
- 2. 최적 입법대안의 제안 29
- 3. 연구의 한계 30

참고문헌 31



I. 입법평가 개요



1. 입법평가의 배경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으로 약칭함)의 제정 목적

-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재수리법」 제정 이후에도 송례문 부실 복원 등 문화재 수리에 관한 지속적인 문제 발생

- 「문화재보호법」으로부터 문화재수리법이 독립 입법으로 2010년 2월 제정되고 2011년 2월 시행된 이후에도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함
- 송례문 화재 이후 이에 대한 수리 공사가 진행되어 2013년 5월 송례문 복구 준공식이 개최되었으나, 이후 불과 몇 개월만에 송례문의 단청이 떨어져 나가거나 기와, 누각 기둥 등에서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송례문 복구에 쓰인 재료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수사가 진행된 바 있음
- 수리업자 일부의 문제일 수 있으나, 이른바 면허 대여, 하도급, 입찰담합, 자본적 보조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제도적, 행정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문화재수리 제도 개선을 위해 문화재수리법의 규범적 체계를 분석하고 개선의 적절한 방향성 설정을 위한 입법평가가 필요한 실정임

▶ 입법평가의 목적

- 문화재수리법 제정된지 약 5년이 경과되고 있고 동법 시행 이후 문화재 수리 분야에서 발생한 문제점들과 입법개선 노력을 토대로 문화재 수리 품질 개선이라는 입법목적보다 더 실효성 있게 달성될 수 있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화재수리 제도 개선에 대해 문화재수리법이 법적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본 평가보고서에서는 “문화재수리 품질 제고”를 위한 사후입법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입법평가의 대상

▶ 법률 제정 목적의 분석

- 법률 제정의 최종적 목적: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
- 법률 제정의 중간적 목적: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 법률 제정 목적 달성을 위한 규율 범위: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평가 대상의 선정 방법

- 법률 제정의 최종 목적인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계승 달성 여부는 제도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고 법률의 적용 과정을 거친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법률과 정책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가 되며 입법평가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위한 여러 제도적 수단들이 문화재수리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에 적실성을 갖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겠음

- 문화재수리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수단들 중에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규정들은 이번 연구에서 평가의 대상으로 삼기로 함
- 문화재수리법의 특성상 현행 법률의 시행에 따른 평가와 아울러 입법의 불비가 있는 부분도 함께 고찰하고자 함

▶ 입법평가의 구체적 대상

-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한 법상 제도
- 문화재수리 기술 및 재료 연구 및 보급을 위한 법상 제도
- 문화재수리에 관한 문화재청의 지위와 책임 관련 제도

3. 입법평가의 범위

- ▶ 문화재수리법은 제정된 법률의 시행이 문화재수리의 품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입법평가함
- ▶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법률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병행하고 적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로 함

4. 평가항목의 제시

- ▶ 평가 기준은 문화재수리법의 규범 목적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기로 함
 - 첫째, 문화재수리를 위한 개선은 어떤 체계를 갖고 있으며 연혁적으로 적절한 방향성을 설정해 왔는가?(규범 체계의 분석)
 - 둘째, 문화재수리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규범의 효과성 분석)

-
- 셋째, 문화재수리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들은 적실성을 갖고 있는가? (규범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5. 평가방법론

- ▶ 평가 방법은 규범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명확성, 법적정합성을 평가하고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법 시행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분석함
- ▶ 실태조사, 설문조사, 비용편익분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나, 다만 향후 종합적인 입법 평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문화재수리법에 대한 수리업자, 문화재관리자, 전문인력, 일반 국민 등의 신뢰도, 만족도, 기여도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 문화재수리법 수범자 및 전문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문화재수리 종사자들은 법률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연구 기간의 한계로 인해 공청회 자료 및 연구 자료들을 통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함

II. 입법평가



1. 규범 체계의 분석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연혁

- 제17대 국회에서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제18대 국회에서 다시 「문화재보호법」 분법과 함께 문화재수리법 단독 입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정부는 2008. 11. 2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하였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김재윤의원등 17인발의) 등이 제안되었으나 대안을 마련하고 위의 정부 제출안 등과 함께 대안 폐기함
- 제정안(대안)이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됨(2009. 12. 30)
- 문화재수리법이 2010.2.4 법률 제9999호로 제정됨
- 문화재보호법의 체계가 방대해짐에 따라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에 관하여 독립 입법을 한 것을 법률의 체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안이유

-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통합되어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을 원용하고 있음

-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문화재수리공사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고 있어 문화재수리공사 수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문화재수리에 있어 의무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원용하지 않고 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입법을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의무감리제도를 도입한 것 역시 문화재수리의 품질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의무감리의 범위는 다소 협소하게 설정되어 미흡한 점도 있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

- 이 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재수리법의 제정 목적은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을 유지하고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적절한 규정들을 두게 하는 등 대체로 적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입법 자체에 대해서는 학계와 실무계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문화재수리의 기본원칙 등(제3조부터 제7조까지)

- 문화재수리의 원칙과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의 책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수리는 원형 보존에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고,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는 성실의무를 준수하여 문화재를 수리하도록 하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의 원칙과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수리의 기준을 보급하여 문화재수리가 전문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문화재수리의 원칙과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들이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과 문화재기본계획과 연계한 점, 성실의무를 규정한 점 등은 일반적으로 타당하지만, 문화재수리를 지나치게 시장의 원리에 맡긴 점, 문화재수리 기준 보급에 있어 추상적 규정들만 두고(제7조) 구체적인 기준 설정에 관한 문화재청의 기준설정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아 문화재수리의 기준이 실효적으로 보급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문화재수리의 기본원칙으로서 ‘원형보존’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특히 건축문화재의 경우 기술이나 재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선진국에서는 원형보존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원형보존의 의미를 재해석할 여지도 제기되고 있음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 등(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53조)

- 전문능력을 갖춘 유능한 문화재수리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도를 도입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수리 관련 기술자의 자질을 높이고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함
-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53조 보수교육의 경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협회를 통한 문화재수리 기술력의 향상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문화재수리업자들의 등록 등(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 문화재수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을 하는 자의 자격기준 등을 마련하고, 문화재수리 분야별로 업무의 종류와 업무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 영역을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하여 문화재수리의 분야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수리업의 양도·승계 등에 필요한 절차·내용 등을 정함
-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영업의 양도·승계 등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영업질서의 투명성·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문화재수리업의 도급·하도급 제도의 정비(제24조부터 제32조)

-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도급·하도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에서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문화재수리 계약 당사자는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신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정 부분 이상은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하도급 대금을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에 있어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문화재수리대금 지급 등에 관련하여 하수급업자의 지위를 보호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문화재수리의 하도급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현실에 있어 문화재하도급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자격 대여까지 문제되는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음

▶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54조)

-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책임을 정하고, 이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며,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 등은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수리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이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현장점검 등을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문화재수리 품질 확보를 위한 문화재청의 실질적 개입 권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문화재청은 극히 예외적으로 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고(주로 동산문화재) 건축문화재를 직접적으로 수리할 근거 조항이 희박함
- 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한 평가가 공유되지 못하고 문화재수리 사업을 발주하는데 있어 주로 비용만으로 평가하고 문화재수리 사업의 기술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제도의 도입(제38조)

- 현재 문화재수리에는 의무감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임의적 감리에 그치도록 되어 있으나 중요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의무감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수리 발주자는 중요한 문화재의 수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를 거치도록 함
- 의무적 감리제도의 도입으로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재수리 감리대상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바 그 범위가 지정문화재의 경우 공사에정금액 5억원 이상, 주변시설물의 경우 공사에정금액 7억원 이상에 불과하여 의무감리의 범위가 크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문화재수리법 독립입법시 변경된 사항 종합 정리

- 문화재수리업체의 수리 범위 확대: 문화재 뿐만 아니라 문화재 주변시설물도 수리 가능
- 문화재수리업 분류 방식 변경: 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으로 구분

- 하도급의 법적 근거 신설: 종합수리업자가 전문수리업자에게 하도급 가능
- 감리 의무화: 지정문화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5억원 이상, 주변시설물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7억원 이상
- 감리업 대표 범위 확대: 문화재실측설계기술자 뿐 아니라 문화재수리기술자도 가능
- 문화재 관련 조정설계 중 조정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예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문화재조정기술자에게 의뢰 의무

▶ 문화재수리 관련 행정규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법령명	법령종류	발령번호	발령일자
2015년도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문화재청고시	제2014-119호	2014.12.1.
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	문화재청예규	제128호	2013.11.30.
동산문화재 모사에 관한 지침	문화재청예규	제134호	2014.3.27.
문화재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문화재청고시	제2014-30호	2014.3.28.
문화재 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문화재청고시	제2014-30호	2014.3.28.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문화재청고시	제2013-128호	2013.12.31.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문화재청예규	제133호	2014.3.1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문화재청고시	제2010-130호	2010.12.22.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	문화재청고시	제2012-145호	2012.12.24.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문화재청고시	제2012-140호	2012.12.24.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문화재청고시	제2014-32호	2014.3.28.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문화재청고시	제2013-48호	2013.5.20.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문화재청고시	제2012-92호	2012.8.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자문단 운영 규정	문화재청예규	제141호	2014.7.31.

- 문화재수리법에서 기준으로 보급할 것을 규정한 “1.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이나 자재의 규격·품질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수리등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행정규칙 가운데 미비한 점이 있다는 비판이 있음. 특히 현실적으로 문화재수리 보고서 작성이 미비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문화재수리 대가에 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함

2. 규범의 효과성 분석

▶ 규범의 효과성 분석 방법

- 문화재수리 제도 개선을 통한 규범의 효과성 분석을 하기 위하여는 비용 효과분석 또는 사회적 조사 분석을 실시해야 하지만, 문화유산 영역의 경우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규범의 수범자들에게 규범의 효과성에 관한 사회학적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문화재수리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규범이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 부실 수리의 위험성 상존

- 문화재수리에 대한 의무감리 범위가 협소하고 부실 수리가 나타난 경우에도 제재 규정이 미비하며, 특히 부실 수리나 자격대여에 대한 자격 취소 요건이 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무형문화재보유자의 문화재수리 기술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이 다른 수리기술자들에게 교육되는 통로가 거의 없음
- 문화재 수리의 공사비가 소액인 경우가 많아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하여 감독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수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여러 현장에 중복배치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바 수리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큼

-
- 고도의 수리기술이 필요하거나 장기간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국민적 관심사가 큰 문화재수리에서는 정부가 직영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됨

▶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경력에 관한 정보가 없음

- 문화재수리 능력을 평가하거나 경력 정보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음
- 문화재수리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문화재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문화재수리 비용에 관한 기준 정비가 필요함

- 문화재수리 기술, 문화재수리 재료의 시대변화를 품셈에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
- 이면 하도급 계약이 관행화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 문화재수리 기술 또는 재료를 시장에만 맡겨두고 있음

-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부재를 관리하거나 문화재 재료를 수집, 보존하며 문화재수리 기술을 보급하는 기관이 없음
- 일본과 같이 문화재수리를 지도하거나 진흥시키는 협회 또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음
- 문화재수리 기법과 재료가 연구되지 못하고 있으며 재료, 전통안료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이에 따라 원형보존의 문제가 일상적으로 나타남

▶ 문화재수리의 정부의 직접 수리 책임 강화

- 현행 문화재수리법은 문화재수리를 지나치게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맡기고 있고 정부의 문화재수리에 관한 책임과 감독 권한이 거의 없음
- 문화재수리협회에 관한 다음 규정을 통해 문화재수리협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1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42조(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 ① 문화재수리업자등은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등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제사업 등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수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문화재수리협회는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문화재수리협회의 회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지회나 분회를 둘 수 있다.
 - ⑤ 문화재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공제사업, 문화재수리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문화재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수리협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수리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 제44조(「민법」의 준용) 문화재수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그러나 현행 문화재수리협회가 실질적인 문화재 수리 기술 지원 등이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 진흥 및 보급을 위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문화재수리 정보가 축적되지 못함

- 문화재수리 현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문화재수리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문화재수리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문화재수리에 관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3. 규범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 인식 분석의 방법

- 첫째, 문화재수리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함
- 둘째, 문화재수리 제도 개선을 위한 민간 전문가들의 견해를 분석함(이 방법은 본 연구에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실제 조사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실시하는 것임)

▶ 2012년 12월 11일 정부 제출 문화재수리법 개정안

- 제안이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우수한 문화재수리능력을 현장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 등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첫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부여(안 제11조의1항):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문화재수리와 관련되는 기능분야의 보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최고의 전통기능을 가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보다 많이 활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둘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력 관리제도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청장에게 경력·학력·근무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경력 등을 신고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는데,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 전문인력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력 배치를 할 수 있고, 문화재수리 전문인력이 자신의 경력 등을 관리하고 증명하는 것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 셋째,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한 평가 및 공시 제도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 등은 미리 문화재청장에게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는데,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한 정보들을 공시함으로써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 등을 선정하려는 발주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2012년 12월 11일 정부 제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약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수리기능자 자격 부여: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공예기술 분야 50개 종목 중 11개 종목이 문화재수리기능자(20개 분야)의 업무범위와 유사한 바, 개정안은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문화재수리와 관련되는 기능 분야의 보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됨(2013.1.31.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총 67명 중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소지자는 40.3%인 27명이고,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미소지자는 40명).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전통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술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활용함으로써 문화재수리 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중요무형문화재 인정 기준 및 절차를 보면,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에 비해, 훨씬 검증절차가 까다롭고 엄격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를 수리기능자로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수리와 관련된 전문교육 이수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력·학력·근무처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경력관리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와 전기공사법 제17조의 2, 전기통신공사법 제39조 등에서 건설기술자 등은 자신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에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는 건설기술자 등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경력 등의 허위신고자에 대한 벌칙 및 신고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데,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자긍심 및 문화재수리 품질제고에 기여하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이를 실효성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의사항, 의무사항, 자격취소 요건, 기술 수준과 등급에 따른 차별화 등을 법체계에 맞게 정비해야 함

-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한 평가 및 공시: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안정적 경영, 기술능력 확보 및 신인도 제고 등을 유도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문화재수리 분야에서도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공사에서도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의 개략적인 능력을 파악할 수 있어 최적의 문화재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과태료 부가대상 범위가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문화재수리업자 등에게 일반현황, 수리실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문화재수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한 주요 정보의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건설한 업체, 장기간 경험과 능력을 검증받은 적격한 업체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업 등의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전해철 의원안: 2013년 3월 28일 전해철의원 등 10인이 제안하여 국회에서 의결되었음**

- 2014년 5월 28일 공포 (법률 제12693호)
- 개정이유: 현행법은 문화재수리업 사업자의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일반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달한 경우에도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예외로 하여 기업회생을 도모하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문화재수리업의 경우는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없어 관련 업종 간 형평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따라서 문화재수리업의 경우도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법 간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문화재수리업 사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4호 단서 신설)

- 개정조문: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
 1. - 3. (생략)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 (이하 생략)

▶ **주호영 의원안: 2013년 11월 29일 주호영 의원 등 11인 제안**

- 제안이유: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주요내용: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및 제60조)

▶ **황진하 의원안: 2013년 12월 03일 황진하 의원 등 10인 제안**

- 제안이유: 조상의 얼과 정신이 서려있는 전통건축을 원형보존하고 전통재료와 전통기법을 보존·전승하는 것은 민족문화의 발전과 문화융성의 초석이라 할 것임
- 하지만 건축문화재 수리 시 교체되는 부재 중 보존가치가 있음에도 보관 장소가 없어 버려지거나 분산관리 되는 등 보존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급격한 현대화의 영향으로 전통재료 확보 및 전통기법 전승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특수법인 형태의 “전통건축수리기술훈흥재단”을 설립하여 전통건축 부재와 재료의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및 전통도구의 보존과 기법 전승 등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보존·전승을 위한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장은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함(안 제43조의2제1항 신설)
- 나.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제4항 신설)
- 다.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제5항 신설)

▶ 박혜자 의원안: 2013년 12월 19일 박혜자 의원 등 12인 제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필기와 면접 위주인 시험에서 필기시험 면제는 사실상의 합격이나 다름없으며, 특히 한국건축구조 시험은 문화재 수리·보수 자격증시험에서 핵심으로 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해당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의 경우에도 필기시험 중 관계법령 관련 필기시험만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응시생간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 안민석 의원안: 2014년 3월 11일 안민석 의원 등 15인 제안

- 제안이유: 현행법상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고,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한 자도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최근 승례문 부실 복구 논란과 더불어 문화재수리기술자들이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되는 등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물의가 잇따르면서 문화재수리 자격관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주요내용: 이에 문화재수리자격증 대여 관련 범죄의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문화재수리와 기술자 자격관리를 엄격하게 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호 신설 및 제59조제2호 삭제)

▶ 박수현 의원안: 2014년 6월 30일 박수현 의원 등 18인 제안

- 제안이유: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의무,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및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이력의 시공능력 평가 반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급보증제도,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상습체불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명단 공표 및 평가 시 체불 이력 반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문화재 수리공사에 있어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주요내용: 문화재 수리공사에도 건설공사의 경우처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및 직접지급, 상습체불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명단 공표 및 평가 시 체불 이력 반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화재 수리공사로 인한 건설기계 대여금의 체불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5호,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4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2014년 8월 12일 정부제출안

- 제안이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의 검토

- 2012년 정부제출안의 개정안은 국회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문화재수리 기술 및 재료를 진흥하기 위한 황진하 의원안은 적극 개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평가됨
- 안민석 의원안의 경우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재수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형벌에 의한 품질 향상은 소극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보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수리 하도급과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박수현 의원안의 개정 취지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 수리 입찰제도의 개선 필요성

-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 사업에 있어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수리업자 가운데 일반적으로 3억원 이하가 건수의 80여%, 예산의 50여%를 차지하는 바, 단순히 예산을 중심으로 한 적격심사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담보할 방법이 없음
- 문화재수리 능력과 경력을 평가하거나 해당 능력을 평가하는 등급화가 필요함

▶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품셈 개발

- 전통기술, 전통재료, 전통기법을 최대한 발굴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음
- 현실적인 노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 의무감리의 확대 및 책임감리 제도 도입

- 의무감리의 범위하 현실적으로 문화재 수리 건수의 5% 이하에 불과하여 의무감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상주감리를 해야 하는 경우를 책임감리로 전환하고 책임감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III. 입법대안 검토



1. 입법대안 제시

▶ II.에서 실시한 입법평가를 바탕으로 문화재 품질 향상을 위한 입법대안이 필요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문화재수리 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책임 강화(부분적 수리 직영)
- 문화재수리 의무감리 확대 및 책임감리제 도입
- 문화재수리 기술 축적 및 보급, 문화재수리 부재 관리 보급 기관 설립
- 이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가장 절실하다고 판단됨

▶ 2013년 12월 관보 게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 법령 개정 또는 입법대안 심사에 있어서는 세부과제의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 20개 세부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음

대과제	중과제	세부과제	소요예산 (단위 : 억 원)
문화재수리 정책 체계화	문화재수리 제도 기반 마련	문화재수리 법령 합리적 개선	12.0
		문화재수리 기준 정비	
	문화재수리 행정 합리화	문화재수리 평가 개선	5.0
		시도지정문화재 수리 개선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제고	설계심사 및 기술지도 운영 개선	253.18
		문화재수리 종사자 기술역량 강화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구축 강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구축	
	문화재수리 기술 진흥 기반 구축	문화재수리 실적 및 경력관리제도 구축 운영	16.9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시험 제도 개선	
		문화재수리 기술 유관기관 협력 강화	
		문화재기능인 활동 지원 강화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문화재수리 품질 제고	문화재감리 시행	390.0
		문화재수리 직영사업 실시	
		문화재수리 현장점검 개선	
		문화재수리 현장 공개 확대	
	문화재수리 품질 기반 강화	문화재수리 전통재료 활성화	61.8
		문화재수리 전통도구 활성화	
		문화재수리 선진화 국제교류 협력	
		문화재수리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3개 대과제	6개 중과제	20개 세부 추진과제	738.88

2. 입법대안 심사

▶ 문화재수리 기술 및 자재 지원 강화

- 문화재수리를 위한 자재와 기술을 정부가 직접 지원
- 황진하 의원안이 입법대안으로서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이를 유지하여 제안하되, 조문을 제43조의2가 아닌 제41조의2로 수정함
- 제43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전통건축의 부재(部材)와 재료 등의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
 2.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확대 및 산업화 지원
 3.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연구 및 전승 활성화
 4. 북한의 전통건축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보존 지원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⑤ 국가는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황진하 의원안에서 문화재수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재수리 직영 사업과 감리 사업을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기능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통건축에 한정하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 동산 문화재 수리와 건축 문화재 수리가 성격이 다르고 동산 문화재 수리는 박물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건축으로 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봄
- 재단은 문화재수리 직영, 문화재수리에 대한 감리 수행, 문화재수리의 기술와 재료의 지원 등이 중심 업무가 되어야 함

▶ 문화재수리에 대한 감리 강화

- 문화재수리에 대한 감리의 주체에 문화재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함
-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수리에도 책임감리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수리 정보 축적 및 공개 강화

-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직접 축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수리 보고서 관리 및 공유, 공개를 강화할 제도화해야 함

▶ 문화재수리업자 및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 정부제출안의 다음과 같은 조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입법대안으로 유지되어야 함
- 제14조의2(문화재수리등의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문화재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수리등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은 해마다 전년도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시 방법, 신고 시기 및 신고 시 제출할 자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62조(과태료) … 2의2.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제14조의3(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 관리 등) ① 문화재청장은 자본금, 경영실태,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 등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입법대안의 수정 및 평가결과

▶ 문화재수리의 품질 개선을 위한 입법평가의 결론으로서 입법대안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됨

- 첫째, 정부의 문화재 직접 수리 확대: 문화재수리기술진흥재단 또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황진하 의원안)에서 직접 수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둘째, 문화재수리에 대한 감리 강화: 문화재수리 감리 범위 확대 및 책임감리제의 도입. 위의 재단에서 감리 업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문화재수리 전통기법 및 재료 지원 강화: 위의 재단이 문화재수리 전통기법 지원을 강화하고 재료 연구도 함께 수행하도록 법률을 개정함
- 넷째, 문화재수리 정보 축적 및 정보 공개 강화: 문화재수리현장 공개 강화, 문화재수리업자 능력 및 수리 실명제 종합 관리, 수리 기록 전산화 등
- 다섯째, 문화재수리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문화재수리 경력에 대한 관리, 자격 대여 제재 강화, 불법 예산 집행 제재 강화 등

IV. 요약 및 권고



1. 입법대안의 선택

- ▶ 현행 문화재수리법은 문화재수리 법체계를 정비하고 입법목적에 맞게 문화재수리 품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재수리업이 발전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나, 문화재수리에 있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였음
- ▶ 입법대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을 적절히 활용·보완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입법대안을 제시하였음

2. 최적 입법대안의 제안

- ▶ (가칭) 문화재수리진흥재단 또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 문화재수리 직영
 - 문화재수리 감리
 - 문화재수리 기술 보급
 - 문화재수리 부재와 재료 수집 및 보관, 연구 개발, 보급 등

▶ 문화재수리 정부 직영 근거 조항 마련

- 부분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예: 고도의 기술 또는 장기간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문화재수리의 정부 직영 제도 도입

▶ 문화재수리에 대한 의무감리 확대 및 책임감리 도입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무감리 확대
- 일반감리 외에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 제도 도입

▶ 문화재수리 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 신설

- 전술한 2012년 정부제출안이 타당함

▶ 문화재수리법 제53조를 개정하여 문화재수리 기술 지도 강화

3. 연구의 한계

- ▶ 문화재수리법의 비용편익 분석은 문화재 특성상 편익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별도로 시행하지 않았음
- ▶ 연구기간 및 연구방법의 한계로 전문가 조사를 하지 못하고 공청회 자료 등을 활용하는데 그침
- ▶ 사후적 입법평가의 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연구 진행 과정에서 다수의 입법안들이 제안된 점을 고려하여 제안된 입법안 심사를 병행하였음
- ▶ 이 연구는 법체계와 법연혁적 분석, 법정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는 바, 문화재수리 법제도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법률의 특성상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정비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아울러 고려하였음

참고문헌



-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실태-』, 2014.5.
- 김창규, 『문화재관리의 이론과 실제』, 동방문화사, 2012.
- 김창규, 『문화재보호법각론』, 동방문화사, 2011.
- 김창규, 『문화재보호법총론』, 동방문화사, 2011.
- 도중필,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해설』, 민속원, 2011.
- 도중필, 『문화재 정책 개론』, 민속원, 2009.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 2012.
-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2013
-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4년 7월 4일.
-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체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4년 2월 12일.
-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업무편람』, 2011.
- 문화재청, 『문화재연감』, 2013.
- 역사건축기술연구소,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관한 연구』, 2012, 문화재청.
- 장호수, 『문화재보존·활용론』, 민속원, 2012.
- 장호수, 『새로 고쳐 쓴 문화재학 이론과 방법』, 백산, 200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수리협회 <http://kcpra.kr/>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발행일 2014년 12월 29일

발행인 이원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34(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044)861-0300 F.044)868-9913

등록번호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512-5 93360